<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22104161 문정인

지난 역사 속에서 일본의 개인과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한국(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내려오고 있습니다. 몇가지 일본자료를 예시로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독도’를 일본과는 다른 색으로 우리의 영토로 채색하면서 ‘조선의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 스스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이다’라고 그들 스스로 밝힌 자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1667년에 제작된 은주시청합기는 일본 마쓰에번(현재 시마네현에 있던 봉건 영주 관청)의 관료인 사이토 간스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 곳에서 조선이 보이므로 일본의 서북쪽 한계(경계)는 오키 섬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땅이라고 인정한 자료이지만 최근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 홈페이지에서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다음 1695년 돗토리 번주(현재의 돗토리 현 지역 영주)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돗토리 번 답변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많습니다.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는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간의 치열한 논쟁끝에 1696년 독도가 조선의 땅이다라고 인정한 일본의 의견을 얻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는데 여기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법한 유명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 도중 조업권을 가지고 일본인과의 실랑이로 인하여 일본 본국으로 납치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호키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는데 위에서 말한 1695년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돗토리번 답변서를 받아내고, 1696년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말고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등 다른 문헌등 다른 관련 문헌에서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900년 칙령 제 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 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도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휙득하였다는 법적 주장은 무효가 되는 셈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땅으로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대신들이 울도 군수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을 보면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쳣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으면 지리적 근거도 있기 마련이죠. 독도는 현재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와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 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해수면 위에 매우 작은 수적(물방울)들이 많이 부유해 있고 시정 거리가 1km 이내인 안개)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 가깝고 맨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근거가 이리 넘쳐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어떨까요?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정식으로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 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를 보자면, SCAPIN1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걸 정리해보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 지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 입니다.